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221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익현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6,389,959원 및 그 중 35,164,571원에 대하여 2024. 4. 19.부터 2024. 8. 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의 2023. 10. 16.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23. 11. 3. 접수 제33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김정운

별지